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777

제출연월일 : 2024. 7. 1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제1항"을 "제33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1항"을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격사유)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1. 미성년자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 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승인)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 가유산인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 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 다만, 제 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신설>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 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u>제1항</u>에 따른 설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 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 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1. ~ 4. (생략)

② · ③ (생 략)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u>제</u> 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 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
<u> 분 본문</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u>제33</u> 조의2제1항 각 호
<u>외의 부분 본문</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u>제</u>
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u>본문</u>

② (생략)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 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 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 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 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의2. (생략)
 -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u>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u>
<u>부분 본문</u>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3조의2제1항 각 호
<u>외의 부분 본문</u>
 1. ~ 3.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